

# ノルディ諸國의 商標制 — デンマーク篇 —



金 景 鎮  
<辨理士>

## ① 制度의 概要

デンマーク의 商標法은 商標登録에 관해서는 先願登録主義를 採用하고 있으나 一定한 要件을 具備하면 登録할 수도 商標權의 成立이 認定된다.

外國人에 의한 工業所有權의 享有에 관해서는 파리協約의 同盟國인지의 與否에 不問하고 外國人の 權利能力을 認定하고 있으나 デンマー크 국내에서 事業을 営む하지 않을 때는 原則적으로 本國商標登録에 基礎하여서만 外國人은 登録出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節次를 賦을 能力이 없이 デンマー크에 居住하지 않는 外國人은 デンマー크에 居住하는 代理人을 通하여 節次를 賦아야 한다.

또한 デンマー크에 居住하지 않는 外國人으로서의 商標權者는 デンマー크特許廳에 그가 選任한 代理人을 登録하지 않으면 原簿에서 職權으로 商標登録이 抹消된다.

이 나라 商標制度의 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商標權은 先出願에 의한 登録으로서 發生한다. (法第1條). 그러나 使用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없이도 商標權이 認定되고 (法第2條) 사용의

始期에서 先後가 있으면 先使用者가 優先한다(法第14條1項6號).

그러나 商標에 관해서 먼저 發生한 權利와 뒤에 發生한 權利와의 關係는 一定한 要件을 충足했으면 雙方의 商標權은 併存할 수가 있다(法第7條, 8條, 9條).

(2) 立體商標 및 서비스도 商標權에 의한 保護對象이 된다(法第1條 2~3項).

(3) 外國人이 本國에서 商標의 사용을 개시하고 이어서 デンマー크에서 그 상표를 개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이에 デンマー크에서 그 상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商標의 登錄出願을 했더라도 그 外國人은 그 本國에서 先使用者라는 理由로써 デンマー크에서 商標權者로 保護받게 된다.

다만 國內에서 그 外國商標를 사용하려는 者가 善意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限하지 않는다(法第3條3項).

(4) 出願은 商工長官의 命令으로 定한 商品의 區分에 의해 1 또는 그 以上的 數에 包含된 商品을 指定하고 出願人의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또는 居住地, 事業의 種類 및 商標를 表示하거나 命令으로 定한 出願料를 納入하면 된다(法第16條, 第17條 및 第46條).

(5) デンマー크 國내에서 開催된 博覽會出品物에 사용된 商標은 博覽會에 展示된 날로부터 6個月以内에 出願하게 되면 그 사이에 他人의 使用 또는 出願에도 不拘하고 保護된다(法第18條).

이 保護는 相互主義에 따라 外國에서 開催된 國際博覽會에서의 商標展示에도 適用된다.

(6) 登錄適格性이 있고 不登錄事由에도 該當되지 않는 商標에 관해서는 出願公告가 되고 公告日로부터 2個月間에 누구든지 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法第20條).

(7) 出願이 方式에 違反하거나 不登錄事由에 해당할 때는 出願人에 拒絕理由通知가 나가고 指定期間内에 意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法第19條).

(8) 異議申請의 經過後에 拒絕의 理由를 發見치 못하면 登錄決定이 되면서 商標公報에 登錄公告된다. 出願拒绝对 마찬가지로 商標公報에 公告한다(法第21條).

(9) 拒絕의 決定에 대해서는 出願人の 選擇에 따라 決定日로부터 3個月 以内에 商工長官에게, 또는 6個月 以内에 法院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다(法第21條 및 第44條).

(10) 登錄商標에 관해서는 그 商標權의 存續期間이 登錄日로부터 10年이며 更新할 수가 있다(法第22條).

(11) 商標登録이 되면 商標權의 效力은 出願日에 遷及하여 發生하게 되는데 다만 출원일과 등록일 사이에 發生한 侵害에 대해서는 侵害者에게 處罰은 科하지 않

## 外國制度紹介

고 損害賠償責任만을 負擔시킨다(法第22條, 37條2項, 第39條 및 第40條2項).

(12) 商標登録取消의訴訟은 利害關係人 또는 特許廳長이 提起할 수가 있다(法第25條 및 第26條).

(13) 덴마크國內에서 商業, 其他의 事業을 營爲하지 않는 者는 本國의 商標登録에 관한證明書를 提出해야 한다. 다만 相互主義에 의하여 商工長官의 告示로서 그 提出이 免除될 수가 있다(法第28條).

(14) 外國에서 登錄된 商標로서 그대로의 態樣으로는 덴마크에서 登錄되지 않는 경우에도 相互主義에 의해 商工長官의 告示로서 그 登錄이 許可될 수가 있다(法第29條).

(15) 外國에 出願한 商標를 덴마크에도 出願할 경우에 相互主義에 의해 商工長官은 告示로서 이론바 優先期間을 認定하고 있다(法第30條).

本規定은 물론 非同盟國에 대해서도 덴마크國과의 關係로 보아 해당될 수가 있다.

(16) 덴마크에 居住하고 있지 않은 外國商標權者는 덴마크내에 居住하는 代理人을 選任하여 特許廳에 登錄해야 하는데 이것을 履行하지 않으면 商標登録은 職權에 의하여 抹消된다(法第31條).

(17) 商標權은 營業과 함께 또는 이것을 分離하여 讓渡할 수가 있으며 營業을 讓渡하지 않을 때는 그 營業에 관계되는 商標權은 原則적으로 讓受人에게 移轉한다(法第32條).

(18) 商標權者는 他人에게 商標의 使用을 許諾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要旨를 登錄하지 않으면 안된다(法第34條).

(19) 登錄의 抹消는 法院의 判決이 있는 경우(法第25條, 第26條 및 第27條), 更新登録出願이 없는 경우 또는 登錄抹消申請이 있는 경우(法第27條) 및 外國商標權者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이 없는 경우(第31條2項)에 한다.

(20) 登錄商標에 관한 故意의 權利侵害者는 罰金에 處한다(第37條).

(21) 商標權의 侵害에 대해서는 法院에 대하여 그 行爲의 中止를 請求할 수가 있고 또한 商標權의 故意過失에 의한 侵害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그리나 善意無過失의 侵害者의 賠償額은 侵害에 따른 現實의 賠償額이 加害者の 利益 또는 推定利益을 超過하드라도 그 利益의 範圍에 限定한다는 惠擇을 받게 된다.

(22) 聯合商標 및 防護商標制度는 없다.

## ② 制度의 運用要節次

### 가. 不登録商標

商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는 登錄될 수 없다.

(1) 商標이 正當한 權限없이 國家의 記章, 公共의 國際的標識, 地方公共團體의 記章등의 標識와 混同을 이르키게 하는 것.

(2) 商標가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을 때.

(3) 商標가 法律이나 公共秩序에 違反하거나 嫌惡의 情을 惹起시킬 우려가 있을 때.

(4) 商號, 他人의 姓名, 地名, 他人의 不動產名稱이나 特別顯著한 繪畫의 表示.

(5) 商標가 他人의 文學的, 藝術的 著作物의 特別・著한 名稱으로 認定될 憂慮가 있는 表示나 他人의 美術의 著作物權을 侵害한 것.

(6) 商標가 先出願에 의해 國內에서 登錄된 상표와 混用을 이르길 憂慮가 있거나 出願日이 國내에서 이미 使用되었거나 現在 使用中에 있는 商標와 混同할 우려가 있는 것.

(7) 商標가 先出願으로 이미 外國에서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混同을 이르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 나. 出願 및 登錄

商標登録出願을 하려면 特許廳에 書面으로 願書를 提出해야 하고 願書에는 商標의 見本 添附와 出願人の 姓名 또는 名稱, 그 營業의 種類 및 商品 또는 商品類를 記載해야 한다.

또한 商標가 國내에서 開催된 博覽會(國內 또는 國際博覽會)에 展示된 商品에 처음 使用되고 그 상품을 전시한 후 6個月 以內에 登錄出願을 하면 保護를 받을 수 있다.

出願인이 出願節次에 관한 規定을 지키지 않거나 特許廳장이 이 밖의 事由로서 출원을 拒絕해야 한다고 認定하면 特許廳장은 거절의 事由를 明示하여 그 要旨를 出願人에게 通知하고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意見을 提出할 수 있는 期間을 同時に 定하여 통지한다.

이 기간이 經過하면 출원인에게再次 意見을 申請할 機會를 特許廳장이 賦與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그 出願의 處分을 決定하며 이 결정에 대해 異議가 있으면 3個月 以內에 商工長官에 대하여 訴願을 提起할 수 있고 대나아가서는 다시 6個月 以內에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한편 特許廳장은 出願이 合法의 아니서 登錄을 拒绝할 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는 商標公報에 그 出願을 公告한다.

商標登録에 대한 異議는 그 理由를 記載하여 公告日로부터 2個月 以內에 書面으로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特許廳長은 당해 出願을 處理하게 된다.

그리하여 出願이 承認되면 商標는 商標原簿에 登錄하고 그 事實을 商標公報에 公告하지만 出願이 拒絕됐을 때에는 그 拒絕事實을 商標公報에 公告한다.

異議不成立으로 拒絕한데 대하여 出願人の 不服이 있으면 이 역시 商工長官 또는 法院에 不服提訴를 할 수가 있다.

#### 다. 存續期間 및 更新登録

商標登録에 의해 取得한 權利는 出願日로부터 效力이 發生되며 登錄日로부터 10年間存續한다.

商標權者の 出願으로 期間滿了 때마다 10년씩 更新登録을 할 수가 있고 更新登録出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이 滿了되는 1年前에서부터 過了後 6個月 以內에 特許廳에 해야 한다.

滿了 前에 更新登録出願이 없으면 한번은 商標權者 또는 代理人에게 그 要旨를 通知하게 되며 (義務規定은 아님) 更新登録出願에서는 商標의 總體의 外觀에 影響이 없는 範圍에서 商標權者的請求로서 登錄商標에僅少한 變更은 加할 수 있고 이 事實을 商標原簿에도 登錄한다.

#### 라. 外國商標에 관한 特別規定

민 마크에서 事業을 営爲하고 있지 않은 者가 商標登錄出願을 했을 때는 그 商標가 이나라에서 商標登錄出願에 관계 되는 商品과 同一한商品에 관해 그 本國에서 그 者에 의해 登錄되고 있다는 事實을 證明하도록 되어 있다.

相互主義로서 外國에서 商標登錄이 되어 있어도 이나라에서 登錄이 될 수 없는 것도 商工長官은 告示로서 定하는 條件으로서 外國에 登錄된 態樣 그대로 이나라에 登錄할 수 있다는 要旨를 命하고 있다.

이와 같은 登錄은 商標權者が 그 本國에서 登錄되어 發生하는 保護보다 더 廣範圍하게 保護받을 수는 없다.

또한 相互主義에 의하여 外國에 登錄出願한 商標를 이 나라에도 한 登錄out願은 外國에서 出願한 것과 同時に 한 것으로 간주한다.

國內에 住所나 居所를 갖고 있지 않는 商標權者は 國내에 住所를 둔 代理人을 選任해야 하고 代理人은 商標權者와 同一한 效力を 갖고서 商標에 관한 文書送達을 受取하고 아울러 商標原簿에도 登錄해야 한다.

#### 마. 讓渡 및 使用許諾

商標權은 그 標商가 使用되는 營業과 함께 또는 營

業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가 있는데 營業을 讓渡할 때는 營業에 關係되는 商標權은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讓渡人에게 移轉된다.

또한 登錄商標에 關係되는 權利의 讓受人은 特許廳에 그 讓渡를 通知해야 하고 이에 따라 特許廳長은 통지서를 받고 商標原簿에 그 讓渡를 登錄한다.

그밖에 商標權者가 自己商標를 營業에 使用할 權利를 他人에게 許諾할 때 그 使用許諾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申請에 의해 商標原簿에 登錄하게 되는데 使用許諾이 終了되었을 때는 똑같이 商標原簿에 登錄한다.

#### 바. 登錄의 失效

商標權者가 事業을 廢止했을 때, 登錄後 商標權의 商品이 他人의 商品과 識別할 能力を 明確히喪失했을 때, 商標가 欺瞞의인 것으로 되었을 때, 商標가 法律 또는 公共秩序에 違反했을 때, 商標가 嫌惡의 情을 惹起시킬 우려가 있을 때, 그 登錄은 法院의 判決에 의해 抹消된다.

登錄抹消取消申請은 利害關係人이 商標權者를 相對로 하여 特許廳長의 職權으로 抹消의 訴를 提起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法院의 判決로서 登錄이 抹消되나 이밖에 登錄을 更新안했거나 商標權者 스스로의 請求로서도 抹消될 수 있다.

#### 사. 權利의 法的保護

登錄商標에 관계되는 權利를 누구든지 故意로 侵害하면 罰金에 處하게 되는데 被害者만이 侵害에 대해서 訴를 提起할 수가 있으며 이에 관한 訴는 民事訴訟法에 定한 節次에 따라 民事事件으로 取扱하고 있다.

그러나 商標權者가 國내에 住所를 두지 않았으면 코펜하겐 海事商事法院이 別途로 管轄하게 된다.

侵害上 故意 또는 過失로 商標權을 侵害한 者는 商標權者가 입은 損害를賠償할 責任을 져야하고 故意 또는 過失이 아니·라도相當히 認定하는 限度에서 被害者에게 損害賠償할 責任을 갖게 된다.

한편 登錄出願後 登錄日까지에 한 侵害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은 登錄日後 1年 以內에서만 提起할 수가 있고 그밖에 登錄日以後의 商標權侵害은 存續期間에만 適用하게 된다.

商標의 使用許諾時에 別途의 合意가 없으면 侵害訴訟을 提起할 수 있고 提起時에는 반드시 商標權者에 그 要旨를 通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